

윤리현장

우리는 시공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건설산업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화합, 기술혁신, 인재육성, 고객만족] 구현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림건설 주식회사 윤리현장]을 정하여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자랑스러운 다림건설의 일원으로서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조직과 개인의 가치 및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절대적 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없애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며, 동료와 화합하는 조직문화 실천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직위 및 업무 등의 우월적인 직위를 이용하며 부당한 언행 또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시공관리로 후손의 소중한 자산인 환경을 적극 보호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건전한 거래에 의한 이익을 실현하고, 상호 신뢰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하여 절대안전을 구현하고 완벽한 품질을 제공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전국적인 건설현장 시공 참여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 복지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인력 채용을 우선함으로써 균등한 기회 제공과 사회 통합 노력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다림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리경영규정

제정 2022. 01.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윤리현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다림건설 주식회사의 윤리강령에 해당한다.

제2조(적용범위)

규정은 다림건설(이하 "당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규정은 다림건설(이하 "당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임직원은 당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당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 임직원은 「윤리현장」 등을 준수하여 인권보호 및 증진에 힘쓴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당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당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임직원은 당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당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1.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 구분)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당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당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9조(임직원 상호관계)

1.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5.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정보관리)

1.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 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현장 및 팀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3. 당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4. 임직원은 고객정보, 기술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1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당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2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고객감동을 실현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3조(고객의 이익 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당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경쟁사 및 협력사에 대한 윤리

제14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15조(공정한 거래)

1.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2. 임직원은 당사가 시행하는 제조납품·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은 모든 거래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 당사는 거래업체를 포함한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현장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대표이사, 임원, 본부장 및 팀장은 소속직원의 현장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7조(포상 및 징계)

- 대표이사는 현장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고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 할 수 있다.
- 대표이사는 현장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및 현장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윤리경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윤리경영 관련 중요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 임직원의 윤리현장 실천에 관한 사항
 - 부패방지경영 관련 중요사항
 - 기타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 1항에 의거 윤리현장의 원활한 이행 등을 위한 대표이사의 직무는 윤리경영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4. 윤리경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현장의 운영)

1.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장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현장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윤리현장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22. 01. 01일부터 시행한다.